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. 4. 22 선고 2020가단90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4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에게 2019. 12. 4.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연 73,6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)

판사강민호

별지